



**서우회계법인 베트남**

SEOU VIETNAM ACCOUNTING COMPANY LIMITED

## Tax Updates in Q4 2025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25 년도 4 분기 베트남 Tax Updates 를 전달해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 사항을 선별하여 작성된 국문본을 전달 드리오니 (영문본은 별도 발행),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회계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썬록 귀사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조성룡 회계사 (HANOI)

김형준 회계사 (HCMC)

최준 회계사 (HCMC)

(서우회계법인베트남대표)

(호치민 지점장)

(호치민 지점 Partner)

Mobile: +84 98 548 7377

Mobile: +84 90 247 7335

Mobile: +84 813 767 067

Email: [csrgs@seouvietnam.com](mailto:csrgs@seouvietnam.com)

Email: [kimhj@seouvietnam.com](mailto:kimhj@seouvietnam.com)

Email: [junchoi@seouvietnam.com](mailto:junchoi@seouvietnam.com)

HANOI: 10F,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Cau Giay, Hanoi

HCMC: 14<sup>th</sup> floor, Citilight Building, No 45 Vo Thi Sau, Tan Dinh Ward, District 1, HCMC

## Table of Contents

<b>회계관련 개정사항</b> .....	<b>3</b>
Circular No. 99/2025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3
<b>법인세법 개정사항</b> .....	<b>5</b>
Decree No. 320/2025/ND-CP (2025 년 12 월 5 일 공포 즉시 발효 & 2025 CIT 적용) .....	5
<b>부가세법 개정사항</b> .....	<b>7</b>
Law No. 149/2025/QH15 (2026 년 1 월 1 일 시행).....	7
<b>소득세법 개정사항</b> .....	<b>9</b>
Law No. 109/2025/QH15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이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관련된 규정은 2026 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	9
<b>조세관리법 개정사항</b> .....	<b>12</b>
Tax Administration Law No. 108/2025/QH15 (2026 년 7 월 1 일 시행,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일부규정은 1 월 1 일부터 조기시행) .....	12
Decree No. 310/2025/ND-CP (2026 년 1 월 16 일 시행) .....	14
<b>기타 개정사항</b> .....	<b>16</b>
Decree No. 293/2025/ND-CP (2026 년 1 월 1 일 시행) 최저임금 발표.....	16
Decree No. 274/2025/ND-CP (2025 년 11 월 30 일 시행)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의 지연 납부·회피(포탈)와 사회보험 관련 민원 및 고발에 관한 세부 규정 .....	16
Decree No. 236/2025/ND-CP (2026 년 10 월 15 일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법인세 적용안내 .....	17
<b>OFFICIAL LETTERS</b> .....	<b>19</b>
Official Letter No. 3974/NBI-QLDN1 dated 27 October 2025 from Ninh Binh Tax Department 법인세 인센티브 관련하여,.....	19
Official Letter No. 5070/HYE-QLDN1 dated 3 December 2025 from Hung Yen Tax Department 현물증여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련 .....	20
Official Letter No. 4448/CT-CS dated 15 October 2025 from the Tax Department 합병 후 세금계산서의 수정 및 대체발행 관련 .....	20

## 회계관련 개정사항

Circular No. 99/2025 (202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1. 기업 자율성 확대 (제 11 조, 제 3 조)

기업은 다음 사항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 실제 영업활동에 부합하도록 회계증빙 및 회계장부를 설계
- 내부 관리 목적을 위해 추가적인 세부 계정 개설
- 자체적인 내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정 수립

이에 따라 회계는 기존의 '형식 중심의 규정 준수'에서 벗어나 경영관리 도구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며, IFRS 관행에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 2. 계정과목의 조정

구분	내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ccount 1383: Special Consumption Tax (SCT) on imported goods</li><li>▪ Account 2414: Capital expenditure for upgrading and renovation of fixed assets</li><li>▪ Account 215: Biological assets</li><li>▪ Account 2295: Provision for impairment of biological assets</li><li>▪ Account 332: Dividends and profit payable</li><li>▪ Account 6275: Taxes, fees and charges</li></ul>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ccount 1562 - Purchase-related costs of goods: 매입 관련 비용이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 상품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계정 632 -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li><li>▪ Account 611 - Purchases: 이 계정은 정기재고조사법(periodic inventory method) 하에서 발생하는 매입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li></ul>

구분	내용
<b>구체적인 지침 삭제</b>	Account 111 - Cash; Account 155 - Finished goods; Account 156 - Merchandise, etc. 이 계정들에 대한 level-2 세부계정 및 관련 지침이 삭제되었습니다.
<b>하위계정 신설</b>	글로벌 최저한세(15%) 규정에 따른 <b>추가 법인세 비용</b> 을 기록하기 위해 <b>Account 82112</b> 신설
<b>계정명 변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count 112 is renamed to “Demand deposits” (instead of “Bank deposits”).</li> <li>▪ Account 155 is renamed to “Products” (instead of “Finished goods”).</li> <li>▪ Account 158 is renamed to “Raw materials and supplies in bonded warehouses.”</li> <li>▪ Account 242 is renamed to “Deferred expenses” (instead of “Prepaid expenses”).</li> <li>▪ Account 244 is renamed to “Deposits and collateral” (instead of “Pledged, mortgaged assets, deposits and collateral”).</li> <li>▪ Account 337 is renamed to “Contract progress billings” (instead of “Progress billings according to construction contract plans”).</li> <li>▪ Account 4112 is renamed to “Capital surplus” (instead of “Share premium”).</li> <li>▪ Account 419 is renamed to “Treasury shares” (instead of “Treasury stock”).</li> </ul>

기존 시행규칙 제 200 호(Circular No. 200)와 비교할 때, **새로운 제도는 보다 간소화되고, 최신화되었으며, 높은 유연성을 갖도록 설계되어, '개방형(open)' 철학을 명확히 반영하고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정합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3. 재무제표 표시 방식 개편 (Article 17)**

2025 년 시행규칙 제 99 호(Circular No. 99/2025)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시 요구사항을 확대하여, 수치의 실질과 맥락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는 단순히 거래를

기록하는 수단이 아니라, 경영 및 분석 도구로서 사용자가 수치에 내재된 경제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융상품 및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Circular No. 99/2025 는 이러한 개념을 초기 수준에서 도입하여, **IFRS 9(금융상품)** 및 **IFRS 10(연결재무제표)** 등 국제기준의 향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Circular No. 99/2025 가 재무제표 주석에서 **정성적 공시를 확대**하도록 요구하며, 주요 회계 추정치와 가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IFRS 의 **IAS 1 -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요구사항과 일치하며, 특히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부합합니다.

## **법인세법 개정사항**

### **Decree No. 320/2025/ND-CP (2025 년 12 월 5 일 공포 즉시 발효 & 2025 CIT 적용)**

#### **1. 신기술 제품 판매 소득의 3 년 법인세 면제 적용 (Point b, Clause 4, Article 4)**

이 규정은 신기술 제품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제 4 조 제 4 항 b 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처음 적용된 신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3 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규정인 91/2014/ND-CP 제 1 조 제 2 항에서는 베트남에서 처음 적용된 신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소득에 대한 최대 면세 기간이 제품 판매 수익 발생일부터 5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베트남에서 처음 적용된 신기술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해당 제품이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 목적 공제 대상: 5 백만 동(VND) 이상 거래는 은행이체 필수 (Point c, Clause 1, Article 9)**

**1 회 거래 금액이 5 백만 동 이상인 상품·용역 구매** 또는 기타 지급 비용 중 **비현금 결제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비용은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비현금 결제 증빙은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전 규정 상 2 천만 동 이상).

제 9 조 제 1 항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단일 판매자로부터 5 백만 동 미만의 상품·용역을 구매하더라도, **하루 동안 누적 금액이 5 백만 동 이상인 경우** → 비현금 결제 증빙이 있어야 비용 공제 가능

2. 직원이 기업을 대신하여 비용 지출 시

기업이 직원에게 직접 5 백만 동 이상 상품·용역 구매를 지시하거나 승인하고, 직원이 비현금 결제로 지급한 경우: 아래 조건 충족 시 비용 공제 가능

- 회계 규정, 전표 및 문서 규정, 재무 규정이나 내부 규칙, 또는 직원에게 지급을 승인·허용하는 결정을 따른 증빙 존재
- 기업이 해당 비용을 직원에게 후불 상환

3. 개별 구매 금액이 500 만 동 이상인데, 비용을 계상하는 시점에 기업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구매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된 동일 과세기간에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비용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 또는 세무점검 결과가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Note)**

위 법인세법 시행령 상 손금인정 요건으로 500만동 이상의 구매에 대해 비현금 결제증빙이 요구되나, 일단 미지급

상태인 경우에도 손금을 인정해 준 후, 실제 지급시점에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지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의 손금을 조정하는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현금 지급 시 과거 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손금을 소급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지급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의 손금을 조정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법령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위 규정과 같이 결제 이전에 비용을 인정하고 결제 수단에 따라 사후 조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동일 거래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간 처리 시점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부가세법 하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질 지 주목**됩니다.

또한, 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언급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계약 상의 대금지급시기 내액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overdue) 계약 불이행 상태까지 포함하는지는 불투명하며, 이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guidance가 필요합니다.

## **부가세법 개정사항**

### **Law No. 149/2025/QH15 (2026 년 1 월 1 일 시행)**

#### **1. 상업적 유통 단계에서 가공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농작물, 조림 임산물, 가축 및 양식·포획 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제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 개인 또는 조직이 생산하거나 포획한 농작물, 조림 임산물, 가축 및 양식·포획

수산물로서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제품은 판매 및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된다.

**(개정으로 추가)** 이러한 제품을 매입한 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이를 다른 기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있다.

#### **(Note)**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Law No. 48/2024/QH15에서 삭제되었던 규정이 6개월 만에 다시 복원된 것입니다. Law No. 48/2024/QH15의 발표 당시 **농산물과 같은 면세재화를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면세규정이**

폐지되어 유통과정에서의 큰 혼란 및 유통업자들의 반발이 초래되었고, 결국 유통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통단계의 면세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면세의 취지가 식량, 의약품, 교육, 주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기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음을 고려하면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복원된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므로 2025년 하반기는 여전히 유통업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유효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면세재화의 유통과정에 과세를 한 잘못된 입법의 유효성에 대해 과세당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 사업자 가구 및 개인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세 기준금액을 연간 2억 동에서 5억 동으로 상향. (Point b, Clause 1, Article 1 of the 2025 Amended VAT Law, amending and supplementing Clause 25, Article 5 of the 2024 VAT Law)**

**3. 사업자 가구 및 개인에 대한 매출액 불문하고 정액(고정액) 부가가치세 제도의 폐지 (Clause 3, Article 1 of the 2025 Amended VAT Law)**

회계, 세금계산서 또는 증빙서류를 법령에 따라 이행하지 않거나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생산·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 가구 및 개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조세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정액(고정액)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중 일부 폐지 (Clause 3, Article 1 of the 2025 Amended VAT Law)**

기존 부가세법 제15조 제9항 제c호 삭제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 중 하나였던,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도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 이라는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Article 15. VAT refund**

9. A business establishment must satisfy the following requirements to receive VAT refund in the cases specified in this Article:

- a) The business establishment is eligible for VAT refunds according to regulations of Clauses 1, 2, 3 and 4 of this Article, pays VAT using the credit-invoice method, prepares and retains accounting books and accounting records in accordance with accounting laws; has checking accounts at banks under it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 b) Regulations on deduction of input VAT in Clause 2 Article 14 are complied with and it is not the case specified in Clause 3 Article 14 of this Law;
- ~~c) The seller has declared and paid VAT under the invoices issued to the claiming business establishment.~~

**5. 생산 과정에서 회수되는 부산물, 부제품 및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세율 (Clause 2, Article 1 of the 2025 Amended VAT Law)**

생산 과정에서 회수되는 부산물, 부제품 및 스크랩에 적용되는 부가세율은 종전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세율에서 각각 해당하는 부산물, 부제품 또는 스크랩에 적용되는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사항**

**Law No. 109/2025/QH15 (2026 년 7 월 1 일부터 시행이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관련된 규정은 2026 년 과세기간부터 적용)**

- 1. 근로소득: 누진세율표 개정, 본인 및 부양가족 인적공제 금액 조정(인상),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및 훈련비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조문																												
누진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월 급여 (million)</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5</td> <td>5</td> </tr> <tr> <td>&gt;5 - 10</td> <td>10</td> </tr> <tr> <td>&gt; 10 - 18</td> <td>15</td> </tr> <tr> <td>&gt; 18 - 32</td> <td>20</td> </tr> <tr> <td>&gt; 32 - 52</td> <td>25</td> </tr> <tr> <td>&gt; 52 - 80</td> <td>30</td> </tr> <tr> <td>&gt; 80</td> <td>35</td> </tr> </tbody> </table>	월 급여 (million)	세율(%)	- 5	5	>5 - 10	10	> 10 - 18	15	> 18 - 32	20	> 32 - 52	25	> 52 - 80	30	> 80	35	<table border="1"> <thead> <tr> <th>월 급여 (million)</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10</td> <td>5</td> </tr> <tr> <td>&gt; 10 - 30</td> <td>10</td> </tr> <tr> <td>&gt; 30 - 60</td> <td>20</td> </tr> <tr> <td>&gt; 60 - 100</td> <td>30</td> </tr> <tr> <td>&gt; 100</td> <td>35</td> </tr> </tbody> </table>	월 급여 (million)	세율(%)	- 10	5	> 10 - 30	10	> 30 - 60	20	> 60 - 100	30	> 100	35	Article 9
	월 급여 (million)	세율(%)																													
- 5	5																														
>5 - 10	10																														
> 10 - 18	15																														
> 18 - 32	20																														
> 32 - 52	25																														
> 52 - 80	30																														
> 80	35																														
월 급여 (million)	세율(%)																														
- 10	5																														
> 10 - 30	10																														
> 30 - 60	20																														
> 60 - 100	30																														
> 100	35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	본인: VND 11 million/월 부양가족: VND 4.4 million/월/인	본인: VND 15.5 million/월. 부양가족: VND 6.2 million/월/인	Article 10, Clause 1, Points a & b																												
추가공제	N/A	기부금 및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및 훈련비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한도 및 기준에 따라 공제 (향후 시행령에서 안내 예정)	Article 11																												

**2. 사업소득: 비과세 기준금액 인상 및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계산 방식 변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조문
면세 사업소득	총매출 1 억동 이하	총매출 5 억동 이하	Article 7, Clause 1
매출액 기준 소득세 산정	업종별 매출액에 대한 간주세율을 적용하는 추정과세방식 사용 (예: 상품 유통 0.5%, 서비스 2%, 제조업 1.5%, 임대업 5% 등)	이 방식은 총 매출 5 억동 초과 30 억동 이하인 구간에서만 아래 과세소득 기준과 선택적용 가능. 연간 매출액 중 5 억 동(VND 500 million)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 (세율 좌동)	Article 7, Clause 2
과세소득 기준 소득세 산정방식의 도입	N/A	매출액이 아닌 과세소득(수입 -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 산정 체계를 추가로 도입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 후 연간 누진세율표(예: 15% (총 매출 5 억동~30 억동 구간); 17% (총매출 30 억동~500 억동); 20% (총매출 500 억동~)를 적용	Article 7, Clause
<p><b>(Note)</b> 과세소득 기준 세액산정 방식은 누진세율(15%~20%)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특이하게도 이러한 누진세율의 적용이 과세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납세자 A 가 B 보다 소득이 적지만 적용세율은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p>			

**3. 과세소득의 유형 조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조문
카지노 당첨금	과세소득에 포함	과세소득에 불포함	Article 3, Clause 6, Point d
탄소배출권, 차량 번호판, .vn 도메인명, 디지털 자산, 금괴 등 (신규)	언급 없음	다음 항목들을 기타소득"으로 명시적으로 열거: (i)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탄소배출권의 양도 (ii) 차량 번호판 경매 (iii) 국가 도메인명(.vn)의 양도 (iv) 디지털 자산의 양도 (v) 금괴의 양도	Article 3, Clause 10, Points c, d, đ, e

#### 4. 신규 비과세 소득.

구분	신규	개정 조문
Green 소득	(i) 배출 감축 실적/탄소배출권의 <b>최초 양도 소득</b> (ii) <b>그린 채권 이자소득</b> (iii) 발행 이후 <b>그린 채권의 최초 양도 소득</b>	Article 4, Clause 16
스타트업 투자소득	스타트업 창업자 및 벤처캐피탈 투자자의 소득	Article 4, Clause 19
ODA 프로젝트 종사자 소득	다음의 근로소득 (i) 무상원조(Non-refundable) ODA 프로그램/프로젝트 및 비정부기구(NGO)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 전문가 (ii) 베트남 내 UN 시스템 산하 국제기구 대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베트남인 (iii) UN 평화유지군에 참여하는 개인	Article 4, Clause 20
고급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의 근로소득	관련 법령에서 정의·포함하는 <b>고급 디지털 기술 산업 인력</b> 이 벌어들인 <b>급여·임금 소득에 대해 5년간 개인소득세 면제</b>	Article 5, Clause 2, Points a-c

#### 5. 일부 소득에 대한 면세 기준금액의 상향

상금, 저작권료, 상업적 프랜차이즈, 상속, 증여 및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VND 10 million에서 **VND 20 million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6. 자본이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산정방식

유한회사의 지분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거 순 매각차익의 20%로만 과세**하였으나, **취득가액 및 관련양도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2%로 과세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Note)**

과거 소득세법 상 매도대상 회사의 type 에 따른 지분양도소득의 과세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회사 매도자	유한회사	비상장 주식회사	상장 주식회사	원천징수 의무자
개인	<i>Capital gains x 20%</i> <i>(Current CIT rate)</i>	<i>Selling price x 0.1%</i>	<i>Selling price x 0.1%</i>	대상회사

금번 개정으로 매도대상 회사가 유한회사로서, 취득가액 및 관련양도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2%로 과세하는 방법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원칙(양도차익의 20%)이 유지되면서 예외적인 방법(양도가액의 2%)이 추가된 것이며, 두 가지 과세방식을 동등하게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은 아님에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취득가액 및 관련비용을 추정·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양도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조세회피적 주장으로 보고 부인할 가능성이 큼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양도가액의 2% 과세 적용의 여지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 오래전에 설립되었고 관련 서류가 소실·폐기된 경우
- 개인 간 비공식 출자,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과거 법령·실무상 취득가액을 명확히 기록할 의무가 없었던 경우 등

결국 핵심은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정황이지, 납세자에게 부여된 선택권은 아닌 것입니다.

## 조세관리법 개정사항

**Tax Administration Law No. 108/2025/QH15 (2026 년 7 월 1 일 시행,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일부규정은 1 월 1 일부터 조기시행)**

### 1. 세무행정상 납세자의 분류 (Article 3)

세무당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납세자를 분류합니다.

- 세무행정에서의 우선 관리 대상 제도를 결정하고 관리 자원을 배분

- 각 납세자 그룹에 적합한 세무관리 조치, 성실신고·납세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업무 절차를 적용**

납세자의 **세무 위험, 세법 준수 수준 및 준수 이력**을 평가하기 위한 **위험 분석 및 평가 분류**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업종, 산업 분야, 사업 특성 및 운영 방식
- 법적 형태 및 소유 구조
- 사업 규모, 매출액 및 국가 예산에 대한 기여도
- **세법 준수 수준 및 준수 이력**

## **2. 추가·수정 신고 제출 기간 단축 (Clause 5, Article 12)**

이미 제출한 세무신고서 또는 기타 납부 내역에서 오류나 누락을 발견한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무신고 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 년 이내(종전 10 년에서 단축)**에 추가·수정 세무신고 또는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무당국 또는 관할 기관이 **세무조사 또는 세무감사 결정문을 발행하기 전인 경우**
- 해당 신고 건이 **세무조사 또는 세무감사 결정의 범위 또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수사기관이 **형사 수사를 목적으로 추가·수정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사업자 가구 및 개인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자율 판단 (Article 13)**

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연간 매출액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들은 각 과세기간별로 세목별 세액을 신고·계산하여야 하며, 세무당국은 가구 및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및 세액 계산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4.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및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Article 13)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기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가구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플랫폼이 온라인 주문 및 결제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의 운영자(국내 또는 해외)는 가구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 플랫폼이 온라인 주문 및 결제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가구 또는 개인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세금을 신고·계산·납부하여야 합니다.

#### 5. 자동 환급·면제·감면 제도의 도입 (Articles 18, 19)

세무당국은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자동 세금 환급, 면제 및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 세무관리 데이터베이스
- 위험관리 기준
-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자동화된 처리 절차

또한 세무당국은 실무 여건, 인프라 및 정보기술(IT) 활용 역량을 고려하여, 자동 환급·면제·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 Decree No. 310/2025/NĐ-CP (2026 년 1 월 16 일 시행)

##### 1. 반복된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또는 미발행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 및 과태료 수준

최근 실무에서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된 시점에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각 행위를 개별 위반 행위로 보아 각각 처벌하는 해석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해석의 통일성과 집행의 간소화를 위해, 동 시행령은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또는 미발행 행위를 복수로 저지른 경우라도,**

- 해당 행위들이 처벌 시효 내에 있고,
- 동일한 행정 사건에서 함께 검토되는 경우,

하나의 위반 행위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은 세금계산서 **수량, 위반의 성격, 발행 목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는 다음의 두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 **그룹 (i):** 판촉·광고·샘플용 재화 및 용역, 증여·기부·교환, 현물 급여 지급, 내부 소비, 대여·차입 또는 반납 형태로 출고되는 재화에 대해 발행
- **그룹 (ii):**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시 발행

각 위반 유형별 및 세금계산서 수량별 **구체적인 과태료 수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i)	그룹 (ii)	지연발행	미발행
1 invoice	Not applicable	Subject to a warning	Subject to a warning
2-9 invoices	1 invoice	VND 500,000 - VND 1.5 million	VND 1 - 2 million
10-49 invoices	2-9 invoices	VND 2 - 5 million	VND 2 - 10 million
50-99 invoices	10-19 invoices	VND 5 - 15 million	VND 10 - 30 million
100 ~	20-49 invoices	VND 15 - 30 million	VND 30 - 50 million
Not applicable	50-99 invoices	VND 30 - 50 million	VND 60 - 80 million
Not applicable	100 ~	VND 50 - 70 million	VND 60 - 80 million

## 2. 대규모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세무관련	관련 세액이 <b>1 억 동(VND 100,000,000) 이상</b> 이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b>5 억 동(VND 500,000,000) 이상</b> 인 경우 대규모 위반으로 간주	납세자가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르고, 포탈 세액이 <b>1 억 동 이상</b> 이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규모 위반으로 간주 ※ 종전의 재화·용역 가액 기준은 폐지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세금계산서 관련	<b>10 매 이상의 세금계산서</b> 가 관련된 경우 대규모 위반으로 간주하며, 위반 유형에 대한 제한은 없음	<b>10 매 이상</b> 이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그 적용 범위를 <b>세금계산서의 양도·판매 행위,</b> <b>세금계산서의 분실·소각·훼손,</b> 또는 <b>세금계산서 폐기 관련 위반 행위</b> 로 한정

### 기타 개정사항

#### Decree No. 293/2025/NĐ-CP (2026 년 1 월 1 일 시행) 최저임금 발표

Decree No. 293 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 및 시간당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월 최저임금 (VND)	시간당 최저임금 (VND)
1 급지	5,310,000	25,500
2 급지	4,730,000	22,700
3 급지	4,140,000	20,000
4 급지	3,700,000	17,800

시행령 제 293 호에 따른 최저임금은 **현행 수준 대비 월 25 만~35 만 동(VND 250,000~350,000)** 인상된 것입니다.

#### Decree No. 274/2025/NĐ-CP (2025 년 11 월 30 일 시행)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의 지연 납부·회피(포탈)와 사회보험 관련 민원 및 고발에 관한 세부 규정

사회보험료 **지연 납부**가 적발될 경우, 사회보험 당국은 사용자(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발송하며, 지연 납부 금액에 대해 **일 0.03%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사회보험료 회피(포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태풍, 홍수, 가뭄 등 중대한 자연재해
- 관계 당국이 선포한 위험한 전염병
- 법률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로 인한 영향
- 민법상 정의된 기타 불가항력 사유

다만,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60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사회보험 당국의 **서면 독촉을 받은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회보험료 **지연 납부는 회피(포탈)로 간주**됩니다.

### **Decree No. 236/2025/NĐ-CP (2026 년 10 월 15 일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법인세 적용안내**

본 시행령은 **2025 년 10 월 15 일부터 시행**되며,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2024 회계연도란 2024 년 1 월 1 일 이후에 개시되는 모든 회계연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구성기업(Constituent Entity) 이 적격소재국추가세액(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2023 년 12 월에 시작되었더라도 최종 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의 회계연도에 따라 2024 회계연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본 시행령상 2024 회계연도로 적용됩니다.

본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1. 글로벌 최저한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 (Article 3)**

본 시행령에 따르면, 납세자는 다국적기업그룹(Multinational Group)에 속한 구성기업(Constituent Entity) 으로서, **최종 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의 연결재무제표상 연간 매출액이 과세연도 이전 연속 4 개 연도 중 최소 2 개 연도에서 7 억 5 천만 유로(EUR 750 million)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설된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설립 후 4 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중 최소 2 개 연도에서 상기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구성기업은 납세자로 식별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시행령은 적용 제외 대상 그룹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결의 제 107/2023/QH15 호 및 그 부속서에 명시된 투자펀드, 부동산 투자기업, 또는 특수한 소유 구조 및 사업 형태를 가진 일부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 **2.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법인소득세의 중앙정부 예산 귀속 (Clause 8, Article 16)**

본 시행령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법인소득세(CIT)는 **중앙정부 예산에 귀속**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기업(Constituent Entity)은 관련 세무관리 규정에 따라 정확한 신고 및 기한 내 납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3.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및 납부 통화 (Article 17)**

본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구성기업(Constituent Entity)은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정보신고서 및 회계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조정·대사표(Reconciliation Statement)를 **최종 모회사(Ultimate Parent Entity)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기능통화**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구성기업은 본 시행령 제 17 조 제 3 항의 규정을 선택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법인소득세(CIT) 신고서 제출 및 추가 CIT 납부를 베트남 동(VND)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정보신고서상 추가 납부세액이 VND 가 아닌 기능통화로 표시된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구성기업은 해당기능통화로 추가 CIT 를 신고·납부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VND 로 신고·납부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세무신고일 기준으로 해당 구성기업이 주거래로 이용하는 상업은행의 은행간 평균 송금환율을 적용합니다.

#### 4. 최초 세무등록 기한 (Clause 6, Article 15)

본 시행령에 따르면, 구성기업(Constituent Entity)은 보고 대상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세무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국적기업그룹의 2024 회계연도가 2025년 6월 30일 이전(또는 당일)에 종료되는 경우, 세무등록 기한은 **본 시행령의 시행일(2025년 10월 15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해당 그룹에 적용되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OFFICIAL LETTERS

**Official Letter No. 3974/NBI-QLDN1 dated 27 October 2025 from Ninh Binh Tax Department 법인세 인센티브 관련하여,**

공문에 따르면, 2024년 토지법 제 157조 제 1항 및 시행령 제 103/2024/NĐ-CP 제 39조는 토지임대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인세법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회사의 투자 프로젝트는 인허가 당시, 투자증명서 발급 시점 또는 투자 승인 시점에 적용되던 세법에 따라 **계속해서 법인소득세(CIT)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프로젝트가 **개정된 법인세법상 세제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잔여 적용 기간에 대하여,

- 인허가 당시, 투자증명서 발급 시점 또는 투자 승인 시점에 유효하던 법령, 또는
- 개정된 법인세법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율 혜택 및 법인소득세 면제·감면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Official Letter No. 5070/HYE-QLDN1 dated 3 December 2025 from Hung Yen Tax Department** **현물증여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련**

공문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현물 증여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록이 필요한 자산**(예: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소득세(PIT)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급여 또는 보수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지정하지 않고 집단을 대상으로 일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급여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임직원에게 현물증여를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Official Letter No. 4448/CT-CS dated 15 October 2025 from the Tax Department** **합병 후 세금계산서의 수정 및 대체발행 관련**

합병된 회사의 계약 및 기타 자산 관련 의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대체 발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수 회사**는 2020 년 10 월 19 일자 시행령 제 123/2020/NĐ-CP 제 19 조(2025 년 3 월 20 일자 시행령 제 70/2025/NĐ-CP 제 1 조 제 13 항에 따라 개정·보완됨) 및 실제 경제적 거래 내용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 또는 대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The above information is for reference only, not specific consulting advice.  
For more detailed guidance,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our Office.*

**SEOU ACCOUNTING AND CONSULTING COMPANY LIMITED**

**Hanoi Head office:** 10<sup>th</sup> floor, Charmvit Tower, No. 117 Tran Duy Hung, Yen Hoa Ward, Hanoi City

Tel: (+84) 24 3776 7049/50

**Saigon branch:** 14<sup>th</sup> floor, Citilight Building, No 45 Vo Thi Sau, Tan Dinh Ward, Ho Chi Minh City

Tel: (+84)-28-628-628-00